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물류학석사 학위논문

남북 통일에 따른 해양경찰의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f Changes of Ocean Police Roles
as a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지도교수 신 재 영

2019 년 8 월

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물류대학원

항만물류학과

윤 성 기

本 論文을 尹成基의 物流學碩士 學位論文으로 認准함

위원장 : 김 울 성 (인)

위 원 : 김 시 현 (인)

위 원 : 신 재 영 (인)

2019 년 6 월 20 일

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물류대학원

목 차

List of Tables	iii
List of Figures	iv
Abstract	v
1. 서 론	
1.1 연구 목적	1
1.2 연구 방법	2
2. 남한의 해양치안 기관	
2.1 남한의 해양경찰청	3
2.1.1 창설과정	3
2.1.2 해양경찰청의 인력과 장비 구성	4
2.1.3 해양경찰청의 관서와 관할구역	7
2.2 해군	8
2.2.1 해군창설과정	8
2.2.2 해군의 인력과 장비	9
2.2.3 해양경찰과 해군의 관계성	10
2.3 그 외 중요 해양기관	10
2.3.1 해양수산부	10
3. 북한의 해양치안기관 실태 및 담당기관	
3.1 북한해군	13
3.1.1 북한 해군의 창설과정	13
3.1.2 북한 해군의 장비와 병력 구성	16
3.1.3 북한 해군 기지와 편제	16

3.2 북한 해양경비대	18
3.2.1 북한 해양경비대 창설 과정	18
3.2.2 북한 해양경비대 현황	18
3.3 북한 인민보안성	20
3.3.1 인민보안성의 기능 및 특성	20
3.3.2 인민보안성의 조직도	22
4. 경찰통합의 의의	
4.1 경찰통합의 개념	25
4.2 경찰통합의 유형	26
4.3 독일의 통합	26
4.3.1 독일 해군	27
4.3.2 독일 경찰	31
4.4 예멘의 대등적 통합 사례	36
5. 통일 이후 남북한 해양경찰 통합 방안	38
6. 결론 및 제언	44
참고문헌	48

List of Tables

Table 1	해양경찰의 주요 임무	4
Table 2	해경의 장비보유 현황	6
Table 3	해양경찰과 해군의 역할 비교	10
Table 4	독일 통일 내용 연도별 정리	27
Table 5	예멘 통일 내용 연도별 정리	37
Table 6	독일과 예멘 통일의 비교	38

List of Figures

Fig. 1 경찰 통합 방안	39
Fig. 2 미국 USCG, C4ISR 벤치마킹	46

A Study of changes of Ocean Police Roles as a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Yoon, Seung Gi

Department of Shipping and Port Logistics
Graduate School of Global Logistics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bstract

Since the suspension of the port logistics-related projects discussed during the first inter-Korean summit, the current government administration has shown its willingness to pursue cooperative projects. Taking the unification of other countries as an example, the author wants to look into changes in maritime police organizations closely related to port logistics and review existing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in the port logistics sector. In addition, we will study new projects and changes that will be implemented in the future depending on performance analysis and current conditions.

KEY WORDS: Port Logistics 항만물류; Ocean police role 해양경찰 역할;
Inter-Korean unification 남북통일

제 1 장 서 론

1.1 연구 목적

작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급격하게 사이가 경색되었던 남한과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를 선언에 그치지 않고 비핵화, 군사, 경제, 사회문화, 체육, 인도적 협력 등 많은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로 했다. 비핵화 분야는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기관 참관 아래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의 핵시설도 영구적 폐기를 약속하였다. 군사 분야는 판문점 선언 이행 합의서에 대한 부속 합의서를 채택하여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고, 한국전쟁 당시 유해의 공동 발굴도 합의하였다. 또한, 남북공동경비구역(JSA) 내의 완전한 비무장화로 기존에 탄창을 갈아 끼우다가 사격하는 등의 우발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을 제거하며, 향후 북측지역에 민간인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이 평양공동선언문을 통해 합의되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해양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과 대립, 해군력을 중심으로 한 군비 경쟁이 더욱 심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의 바탕으로 해양 강국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안보 환경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의 주요 국가들과 안보 협력 및 교류를 통한 다자간 안보 환경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통일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여러 영역의 통폐합 상황에서 치안마저 불안정하면 사회 질서 및 법체계가 마비되고 남북한 모두 혼돈의 시기를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치안 체계 확립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남한의 경찰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으로 나누어지며, 이 둘은 영토와 영해로 관할권을 이원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 및 수사하며 주요 시설을 경비하는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해양경찰 조직

이 부재하고 해양치안기관이 남한과 다른 방식으로 편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단국가였던 독일과 예멘의 통일 사례분석을 통해 기존 통일국가들은 통일과정에서 경찰통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고, 통일 초기에 경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개념 하에서 추진하였는지를 살펴보겠다. 다른 변수가 생겨 다른 방법으로 통일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두 나라의 점진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서로의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이 된다는 전제하에 통일 해양경찰의 필요성 및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겠다. 주로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경찰청과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들을 근간으로 문헌 분석을 수행하겠다.

특히 독일의 경찰 통합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남북한의 해양경찰 통합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바탕으로 한 미래 지향적 통일 해양경찰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남한의 해양치안 기관

2.1 남한의 해양경찰청

2.1.1 창설과정¹⁾

남한의 경찰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과 더불어 미군정이 설치한 경무국으로부터 출발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경찰기구는 내무부의 치안국으로 개편되었으며, 중앙집권적인 국가 경찰 제도를 수용하고 운용하게 되었다. 남한의 경찰은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조직과 인력의 확대를 가져왔는데, 특히 정치적 측면에서 전쟁이 경찰 의존성이 증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전쟁이 종료된 이후 경찰제도는 기구상의 변화가 있었다. 경찰제도가 전투경찰제도로 변경되어 전쟁 후 북한으로 복귀하지 못한 공산주의자들의 소탕에 투입됨으로써 수많은 경찰관들이 희생되었다.

해양경찰은 6.25 전쟁이 끝난 1953년 부산 연안을 침범하는 일본의 불법 어선 단속과 북한 공작원의 남파 방지를 위해 부산에서 창설되었다. 내무부 치안본부의 하위기관인 해양경찰대를 발족하였고 주된 업무는 대북해양 경비·안보 분야였다. 1966년 7월에는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경찰윤리헌장이 공포되었으며, 1969년 1월에는 경찰공무원법이 공포되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의 계급이 기존 8계급에서 10계급으로 정비되었다. 1978년 치안본부 해경과가 해상보안과로 개명되고 해상에서 경찰 업무를 본격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1991년 5월 경찰법(안)이 국회의 의결을 통과하여 8월 1일 경찰청이 행정 자치부(과거 내무부)의 외청으로 독립된 것을 들 수 있다. 그동안 내무부의 보조기관이었던 치안본부를 내무부의 외청인 경찰청으로 개편한 것이다. 1991년 7월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 개편, 정비창을 청장 보좌기관으로 변경하고, 지구 해양대를 경찰서로, 지대를 해양경찰 지서로 변경하였다. 세월호 사건으로 2014년 11월 국민안전

1) 김형만(2003) “비교경찰제도론”과 이황우, 이창호(2017)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처 소속 해양경비 안전 본부로 변경되었다가 2017년 07월 해양경찰청이 신설되었다.²⁾

2.1.2 해양경찰청의 인력과 장비 구성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해상에서의 경찰업무와 해양 오염방제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이다. Table 1은 해양경찰의 주요 임무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1 해양경찰의 주요 임무

주요임무	상세 내용
해양주권수호	1.해양영토·주권수호 2.국민 권익과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3.동·서해 접경해역(NLL) 안보활동 및 임해중요시설 보호 4.해양대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활동
해양재난안전관리	1.각종 선박사고 및 연안해역 안전사고 발생시 구조 대응 2.태풍, 지진해일 등 해양재난에 대한 대비·대응 3.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 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해양교통질서확립	1.해상교통관제(VTS) 및 선박 출·입항 관리 2.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3.유조선, 유해물질(HNS) 운반선 등 위험선박 안전관리
해양범죄 수사	1.해상범죄에 대한 수사·정보 활동 2.해양·수산 관련 민생침해범죄 수사 3.밀입·출국, 밀수, 해적 등 국제성 범죄 단속
해양오염 예방·방제	1.국가 해양오염방제정책 수립·운영 2.해양·해안오염 방제 총괄지휘 등 해양오염사고 대응 3.해양오염 예방·점검, 해양오염 조사

자료 : 해양경찰 홈페이지-해경의 주요임무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국제법상 경찰권이 인정되는 수역의 범위는 영해 및 접속수역으로 한정하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서도 광의의 경찰권이 인정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내의 해상 이외의 수상, 강 연안을 담당하기도 하지

2) 해양경찰청 사이트, 기관소개 및 연혁에서 발췌

만 대한민국은 해상 이외의 수상 영역은 해경이 아니라 관할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국제 업무 공조 시 해경은 선박의 수배 검거 및 수색 구조 활동 등 해상활동에 주력할 수 있는 해양경비대를 업무파트너로 협조 및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 사법권의 공조는 인터폴을 통해서 하고 있다.

해경은 업무 성격상 경찰이면서 바다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군과 육상경찰 사이에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치안업무와 해안경비 등의 일들을 함께 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은 군사조직인 해군과는 완전히 별개의 조직으로서 외국의 해안경비대의 경우와 같은 준군사 조직이 아닌 완전한 민간 경찰조직으로서 기능을 한다. 하지만, 분단국가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통합방위법에 의거하여 군과 적절한 협력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동·서·남해, 육지와 인접한 해안가, 한강 등에서 경비 및 순찰, 범죄 단속 및 수사, 인명 구조, 화재 진압, 선박 입출항 관리, 해양 오염물질 처리, 안전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양에서 경찰관과 소방관이 하는 모든 임무를 책임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바다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를 통해 범인을 잡고 인질을 구출하거나 폭발물을 처리하는 등 특수 임무를 담당한다. 맡은 일에 따라 각 지역의 행정본부, 함정, 해안가 안전센터, 특공대, 항공대 등에서 근무하며 함정을 비롯한 항공기, 보트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해양경찰 임무 수행에 필요한 함정 및 항공기 조종사, 정비사, 잠수사, 응급구조사 등도 해양 경찰에 속한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바다 면적은 육지의 4.5배나 된다. 넓은 바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루 평균 70척의 함정이 동·서·남해를 항해하는데, 각 함정마다 서울시 면적의 10배가 넘는 해역을 관리한다. 해역을 순찰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사건은 선박과 관련된 일이다. 우리나라 어선은 7만여 척으로 운항 횟수가 많은 데다 화물선, 여객선, 유람선 등 다양한 종류의 배가 바다를 지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선박 사고가 일어난다. 선장이 음주 운항을 하거나 운항 실력이 부족할 때, 배에 사람이거나 짐을 실을 수 있는 기준을 초과했을 때, 마약·총기·폐기물 등 위험 물질을 운반할 때, 어선이 정

해진 어획량보다 많은 어업 활동을 했을 때 등 선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면 검문검색을 통해 처벌을 내린다. 또한, 선원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절도, 불법 거래와 같은 범죄가 일어났을 때도 이를 단속하고 관계자들을 해양경찰서에 인계한다. 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조업 어선, 특히 우리나라 경제수역을 넘어온 외국 어선이 발견되면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양경찰서로 인계해 구속한다. 선박이 암초, 구조물, 다른 선박 등과 충돌하거나 기상 악화로 고립, 좌초, 침몰하는 사고가 벌어지면 현장을 수색하고 구조하는 일도 해경의 역할이다. 선박이나 섬 지역에서 응급 환자가 생기면 헬기나 보트를 이용해 육지로 신속히 수송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양식장이나 선박 등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며 바다에 기름과 폐기물 등의 유해 물질이 유출되면 이를 처리 및 제거하고 원인을 조사한다. 이 밖에 북한, 일본, 중국과 인접한 해역을 지키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함정이나 항공기가 없는지 감시한다. 테러나 납치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해경특공대 및 해군과 협력해 이에 대응하는 작전을 수행한다.

Table 2 해경의 장비보유 현황

구분	보유척수
대형함정(5,000~1,000톤)	35척
중형함정(500~250톤)	39척
소형함정(100톤이하)	110척
특수함정	147척
비행기	6대
헬리콥터	18대

자료 : 해양경찰청(www.wcg.go.kr)

우리나라 해경의 장비보유는 Table 2와 같으며, 해경의 함정은 무게가 1000t 이상인 대형, 200-500t의 중형, 200t 미만의 소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가장 큰 5000t급 함정은 길이가 150m 내외로 축구장보다 길며 높이는 약 38m로 아파트 11층 높이와 비슷하다. 대형함정은 35척, 중형함정은 39척, 소형함정은 110척이 우리나라 해양에 배치되어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해경

의 특수 함정은 147척으로 갯벌이라든지 함정이 접근하기 힘든 사고 해역에 인력을 수송할 수 있는 공기부양정, 기름유출사고 등 해양오염이 발생하였을 때 투입되는 방제정, 해상화재 사건에 출동하는 소방정 등이 있다.³⁾

2.1.3 해양경찰청의 관서와 관할구역

해경은 인천 송도에 소재한 본청을 필두로 전국에 5개의 지방해양경찰청을 두고 있다. 각 지방경찰청에 4-5개의 해양경찰서 및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두어 일선 해양경찰관들의 총괄적 지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안선의 길이는 약 1만4900km로,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17번 왕복하는 정도의 거리다. 이렇게 긴 해안선에는 93개의 해양경비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센터마다 평균 162km의 해안선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전국의 항구가 2,200개가 넘고 66,000여 척의 어선이 수시로 오가기 때문에 수많은 항구를 관리하고 선박의 입출항을 통제하는 일이 해경과출소의 주된 업무다.

해양경찰청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선박을 이용해 밀입국 또는 밀출국을 시도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이 바다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유람선 및 여객선이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검사하는 등 선박의 입출항과 관련된 모든 일을 담당한다. 또한 선박이 항구 부근에서 사고가 나거나 배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등 항구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기도 한다. 이 밖에 방파제, 해수욕장 등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지거나 실종되면 해안가와 인근 바다를 순찰하고 구조 활동을 펼친다.

부속기관으로는 해양경찰교육원이 신입경찰관과 현직경찰관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부산 다대포에 소재한 해양경찰청비창에서 전국의 함정을 수리한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 이후 서해와 동해에 각각 중앙 해양 특수구조단을 설치하여 인명구조에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있다. 해경특공대는 각 지방청(인천, 동해, 목포, 부산, 제주)마다 SSAT⁴⁾를 설치하여 대테러 임무를 맡고 있다.

3) 해양경찰청 사이트, 함정 항공기 현황을 참고하여 작성함. www.kcg.go.kr/kcg/main.do

4) *SSAT : 경찰청 소속으로 경찰특공대가 있다면 해양경찰청에는 해양경찰특공대가 있다. 대테러 전술, EOD 훈련을 받고 지방해양경찰청에 배치되어 해상테러 예방, 진압활동 및 수색, 특수 범죄진압 등의 특수임무를 수행한다. 지방청별 총 5개 특공대가 편제되어 있다.

2.2 해군

대한민국 해군은 해상 및 상륙작전을 수행한다. 해군은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수행하는 해병대를 예하에 두고 있다. 평시는 전쟁을 억제하고 해양주권을 보호하며 국가 대외 정책을 지원한다. 전시에는 해양을 통제하고 군사력 투입, 해상교통로 보호를 주역할로 하고 있다. 해군본부는 해군의 정책 및 군사력 건설과 해군의 동원·편성·훈련·인사·교육·군수·작전을 지원하며 그밖에도 해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해군작전사령부는 해군의 작전 및 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해군교육사령부는 해군의 교육 훈련 및 교육발전을 관장한다. 해군사관학교는 해군의 정규장교에게 필요한 교육을 관장하며, 해군군수사령부는 해군 군수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해군본부는 예하에 작전사, 해병대사, 교육사, 해군사관학교, 군수사 등의 군수 및 지원부대를 포함하여 총 11개의 직할부대를 두고 있다. 해군작전사령부는 동·서·남해 3개 해역함대와 작전지원단, 직할전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군본부 직할부대인 진해기지사령부를 작전 지휘한다.

2.2.1 해군창설과정⁵⁾

광복 직후 손원일이 중심이 된 해사협회의 발족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11일에는 해군의 모체가 된 해방병단을 결성하였다. 이듬해 조선해안경비대로 개칭하여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대한민국 해군으로 정식 발족 하였다. 손원일 준장은 초대 해군 총참모장에 취임하였다. 1949년 4월 15일 에는 덕산비행장(진해)에서 대한민국 해병대가 창설되었다. 이듬해 10월 17일 에는 처음으로 함포를 갖춘 600톤급 미국 해군 구잠함 USS PC-823을 6만 달러에 구입하여 ‘백두산함’ 이라 명명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 이후 9월 10일에는 한국함대를 창설하였다.

해군은 베트남 전쟁 기간(1965-1973) 중에는 수송부대인 백구부대와 해병전

5) 위키백과 : 대한민국해군.

https://ko.wikipedia.org/wiki/BC%80%ED%95%9C%EB%AF%BC%EA%B5%AD_%ED%95%B4%EA%B5%B0

투부대인 청룡부대를 파병하였다. 1973년 5월에는 함대항공대를 재창설하였고, 10월에는 해병대사령부가 해군에 통합되어 해군본부의 해병참모부로 편성되었다. 1978년에는 한미연합사령부 창설과 동시에 해군구성군사령부가 창설되었다. 1986년 2월에는 제 1·2·3·5·6해역사령부와 한국함대를 제1·2·3함대로 작전사령부로 개편하였다. 1986년 2월 1일 동해의 제1해역경비사령부를 제1함대로 이전·개편하였다. 1987년 11월에는 해병부대를 통합·지휘할 조직으로 해병대사령부를 재창설하였고, 1992년 12월에는 한미연합해병사령부를 창설하였다.

1993년 6월에는 서울에서 계룡대로 해군본부를 이전하였다. 1999년 11월에는 평택작전기지를 완공하여 2함대사령부(인천)가 평택으로 이전하였다. 2006년 6월에는 부산해군작전사령부를 부산으로 이전하였으며, 2007년 11월에는 목포해역 방어사령부를 해체하고 3함대사령부(부산)를 목포로 이전하였다. 12월에는 진해의 해군작전사령부를 부산해군작전사령부로 이전하였으며, 2008년 2월에는 한미연합사령부 예하에 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가 창설되었다.

2.2.2 해군의 인력과 장비

2018년 기준으로 해군병력은 해병대 29,000명을 포함하여 총 70,000여 명이며 전력은 수상함 163척(고속정 80여척 포함), 잠수함 10여척, 항공기 6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건조되는 군함들을 비롯해 모든 군함들은 선체 전체에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고 레이더 반사율을 줄이기 위한 경사설계를 적용하고 있다. 상륙 전력으로 상륙돌격장갑차와 전차 등 4종 40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 외 항만경비정, 헬기 이·착함 지원정, 유조정, 청수정, 예인정, 인원 이송정, 상륙정, 청소정 등의 전투근무지원정을 350여척 보유하고 있다.

장교는 장성, 영관 및 위관으로 구분하며 장성은 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으로, 영관은 대령, 중령 및 소령으로, 위관은 대위, 중위 및 소위로 분류한다. 그리고 준사관은 준위, 부사관은 원사,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분류한다.

2.2.3 해양경찰과 해군의 관계성

해군과 해양경찰은 근본적으로 해양에서의 국가 발전과 국가의 권익을 보장하는 국가 해양 세력의 일원이다. 두 국가 기관이 하는 일은 경찰 역할, 군사적 역할, 외교적 역할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Table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Table 3 해양경찰과 해군의 역할 비교

구분	해양경찰	해군
경찰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이 관할권 확보 - 해양수색 및 구조 - 해양환경 보호 - 해상교통안전 확보 - 해상범죄 단속 	국가주권 및 해양권의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초계 활동 - 해양자원 보호 및 해상테러, 밀수방지활동
군사적 역할	국가안전보장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방위 실무 - 주요항만보호 - 해역의 어로보호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 억제 - 해양 통제 - 전력 투자 - 해양교통로 보호
외교적 역할	-	-국가 대외 정책 지원 및 국위선양

2.3 그 외 중요 해양기관

2.3.1 해양수산부⁶⁾

해양수산부는 해양 정책, 해운·항만, 수산·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양 환경, 해양수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며 해양경찰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

6) 김재광(2018), “해양경계 임주전환에 따른 해안경비시스템의 정립에 관한 연구”

다. 해양수산부는 1948년 교통부의 해운국과 상공부 수산국을 모태로 한다. 과거에는 여러 부처에서 해양과 수산 기능이 분산·관리되었으나 1996년 이를 통합하였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회에서 ‘대한민국에는 왜 해양 전담부서가 없느냐’는 건의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후 영해수호 및 해양발전을 목적으로 기존에 있던 해운항만청, 수산청, 수로국 등을 통합하고 농림수산부의 수산 업무를 이관하여 해양수산부라는 이름으로 신설되었다.

하지만 2008년 정부조직개편으로 해수부의 수산 업무는 농림부와 보건복지부의 기능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 해양 업무는 건설교통부와 합쳐져 국토해양부로 운영되었다. 이후 2013년 3월에 다시 독립하여 현재의 해양수산부가 되었다. 해양레저를 포함한 해양산업, 해양환경 등 해양 정책 관련 업무와 어업자원, 어촌양식 등 수산 정책 업무, 해사 안전, 해운 물류, 항만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행정안전부와 다르게 단일차관제이다. 해양수산과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는 등 행정 및 정책기관이지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규제·지원 등의 집행기능을 포함한 업무특수성이 존재한다.

해양경찰은 지난 1953년 내무부 치안국소속의 해양경찰대로 창설되었으며, 30여 년간 내무부 혹은 경찰청의 부속기관으로 존재하였다. 이후 해양수산부가 1996년에 신설되면서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격상되며 독립하였다. 2008년에는 개편된 국토해양부의 외청으로 있었으나, 2013년에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서 다시 해수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바뀌었다. 2013년 6월에 해수부는 국가 위기관리기본지침을 근거로 선박의 충돌, 침몰, 폭발 및 화물유출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의 안전 관리를 위해 부처·기관별 임무·역할 및 협조체계 등을 규정하는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매뉴얼에 따르면 해양선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장관급 기관인 해수부가 총 지휘를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해수부의 외청인 해경청이 수색구조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있었다. 해경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기관’이다. 제56조 ‘해상에서의 긴급구조’에는 해경청장이 ‘해상에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 사고가 발생하면 수난구조법 등에 따라 긴급 구조 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해수부는 동·서해에서 각각 어업관리단을 보유하고 있다. 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과 해양경찰 경비함정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며, 영해수역 및 EEZ수역에 대한 법적요건에 맞는 활동이 구분되어 있다. 영해수역과는 달리 EEZ수역 어업활동에 대해 해양경찰과의 합동단속은 조업권이 보장된 합법 중국어선의 조업방해 문제 등 한·중 양국 간의 외교적 문제 발생의 개연성이 상존해 있다. 현재 해수부와 해양경찰은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상호기관이 협력하고 있다.

제 3 장 북한의 해양치안기관 실태 및 담당기관

3.1 북한 해군

북한은 일반적으로 국제체제에서 고립된 국가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국제 정치적·경제적 관계가 주로 그들과 국경을 같이 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얽매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정학적 위치가 바다의 사용에 제한적이었고, 바다로부터의 침략을 두려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북한은 동서로 양단된 긴 해안을 갖고 있고 한국과 대치중이다. 따라서 북한 해군은 인접국 한국에만 주력하는 작전과 군사력을 건설해왔고, 이로 인하여 연안 방어 전략의 소형함 위주의 현대 해군으로 발전해 왔다. 이에 추가하여 북한은 잠수함을 획득해서 한국의 중요한 해상교통로를 파괴하고, 유사시 한국으로 유입되는 병력과 장비의 증원을 방해하려하고 있다. 북한 해군이 해방과 함께 창설이 되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하에 성장해 오면서 김일성이 군사권을 장악해오던 1980년대 초에 이미 해군전략 개념은 형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현재까지 북한해군은 다수 함정과 기지보유로 작전의 융통성과 기지의 요새화, 우수한 해안방어력, 다량의 상륙전 및 특수전용선 보유, 잠수함 위주 전략과 한반도 주변 해로 익숙 등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의 취약점은 동·서해의 양단된 함대 보유로 통합 작전 불가능, 함정의 노후화 및 소형화, 자동화와 전자전 미약, 공군과의 합동작전 능력 부족, 동계 결빙으로 작전능력 제한, 그리고 훈련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해군력 평가에 관한 많은 연구와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주로 양적 평가에 지나지 않아 장비의 질, 군수지원, 사기, 훈련 정도, 지휘력, 전략·전술, 지리, 기상 등의 요인들은 정보의 부재로 객관적 평가는 어려운 실정이다.

3.1.1 북한 해군의 창설과정⁷⁾

해방 직후 한반도의 각 지역에는 자생적으로 무장단체들이 조직되었다. 이들

7) 김선호(2018), “북한 해양경비부대의 창설과정 연구”

은 일본경찰이 철수한 치안공백을 채우면서 자체적으로 고향의 치안을 유지하였다. 남과 북의 정치세력들은 이 무장단체들을 향후 군대의 모체로 육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미국과 소련도 향후 독립국가 수립에 대비해 은밀히 무력 건설을 추진하였다. 해방 직후 북한지역에도 다양한 무장 세력이 창설되었다. 그중 북한의 각 해안지역에는 자체적으로 수상보안대가 조직되었다. 북한의 정치세력과 소련군에게 치안유지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다. 이들은 효과적인 치안유지를 위해 무장 세력을 재편하였다. 수상보안대는 시기별로 몇 차례 재편되면서 점차 정규군대로 육성되었다. 이 수상보안대가 조선인민군 해군의 모체다.

북한 각 지방에는 자발적인 민병조직으로 자위대와 치안대가 조직되어, 이들 조직이 혼란해진 사회질서와 각종 사고방지 등 일부 치안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러나 1945년 8월 24일 북한을 점령한 소련에 의하여 소련군 제25군 사령부가 평양에 설치되면서 이러한 자위조직들의 활동이 제한되기 시작했다. 동년 10월 12일 북한 주둔 소련 사령관이었던 치스차코프 대장은 북한지역 내에 있는 모든 무장 세력의 해산명령을 내리고, 소련군사령부와 협조 하에 규정된 인원수의 보안대를 창설할 것을 명령했다. 따라서 10월 21일 각종 치안대와 자위대는 해산되고, 그 대신 소련은 김일성에게 무력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새로운 조직으로 약 2,000명 규모의 보안대를 편성하였다. 보안대의 병력과 훈련 문제로 인하여 1946년 6월 보안대훈련소가 개천에 신설되고 신의주, 정주, 그리고 강계에 분소를 두어 보안 대원과 철도경비 대원을 교육시켰다.

한편 김일성은 1946년 2월초 진남포에 평양학원을 설립하고 보안대 간부를 양성하여 김일성 일파의 조직을 정비하고 있었는데 이 평양학원은 그 후 1949년 1월 만경대로 이동하여 제 2군관학교로 개칭되었다. 보안대훈련소가 창설된 직후부터 김일성은 그의 직계인 항일 빨치산출신 30여 명과 평양학원 출신 10여 명을 중심으로 평남 강서군에 보안간부학교를 설립하였다. 이들은 약 4개월간의 교관요원 훈련을 마치고 지방보안 대원과 인민위원회의 극렬좌익분자들 중 900명을 제1기생으로 선발하여 간부요원으로 훈련시켰다. 다시 이 간부학교는 1948년 12월에 평양으로 이동하여 제1군관학교로 개칭되었다.

북한 해군은 1946년 7월에 해안 보안을 전담하는 보안대원을 양성할 목적으로 원산에 본부를 둔 수상보안대를 신설하면서, 동해수상보안대를 원산에, 그리고 서해수상보안대를 진남포에 각각 설치하였다. 수상보안대는 동·서해안에 각각 1개 대대 병력으로 동해는 속초, 장전, 서호진, 신포, 고저 등지에 7개 지대를 설치하였고, 서해에는 서해안 일대에 각 항구와 도서에 각각 배치되었다.

북한은 1946년 8월 중앙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원산에 두었던 수상보안대 사령부를 평양으로 이전하고 해안경비대로 개칭하였다. 원산과 진남포의 동·서 수상보안대도 각각 원산-진남포 경비위수사령부로 개칭함과 동시에 청진에 위수사령부를 추가 신설하였다. 해안경비대의 간부요원들도 초기에는 평양학원과 북조선 중앙간부학교 출신자를 임용하였으나, 이들이 해상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문제가 대두되어 1947년에는 해군군관 학교의 모체부대로서 원산에 해안경비간부학교를 창설하고, 다시 동년 7월 7일 해군군관학교로 개칭하였다. 이 해군군관학교는 1949년 9월에 제1기생 250명, 1950년 5월에 제12기생 750명을 각각 배출하였다.

내무성의 관할 하에 있었던 해안경비대는 1949년 8월 28일 민족보위성으로 이관됨에 따라 정식으로 인민군 해군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북한은 8월 28일을 공식적인 해군절로 기념하고 있다. 초대 해군사령관에는 한무일 중장이, 참모장에는 김원무 총좌가 임명되었으며, 이 해군사령부 예하에는 제1위수사령부(청진), 제2 위수사령부(원산), 그리고 제3위수사령부(진남포)와 해군군관학교, 기술훈련소들이 예속되었다. 당시 병력은 총사령부에 약1,000명, 원산에 3,920명, 진남포에 5,000명, 해군군관학교에 500명, 기술훈련소에 200명, 함대에 200명 등 총 15,270명이었으나, 1950년 5월부터 원산과 진남포에 각각 1개 대대 규모의 육전대를 신설함으로써 6.25전쟁 당시의 해군의 총 병력은 16,200여 명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당시 함정들은 일본경비정과 발동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49년 12월 소련의 군사원조를 받아 대·소군함 35척의 소형함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북한 해군은 6.25전쟁 중 유엔군에 의하여 거의 격멸되고 1953년 휴전 당시

해군세력은 불과 24척의 발동선 등 소형함정과 약 4,400여명의 병력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3.1.2 북한 해군의 장비와 병력 구성

북한해군은 해군사령부 휘하 동·서해 2개 함대사령부, 13개 전대, 2개의 해상 저격여단 등 40여개 기지와 6만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군은 전력의 약 6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하였으며 상시기습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구형함정이 대부분이며 소형 고속함정 위주로 편성되어 기상 악화 시 기동력이 떨어지고 대양에서의 작전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북한의 지리적 특성상 동·서 함대로 양분되어 있어 통합 운용이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북한군도 그 점을 잘 알고 있기에 해안선이 단조롭고 수심이 깊은 동해함대사령부는 다수의 잠수함과 이들을 호위할 중형함 위주로 편성하였고, 복잡한 해안선을 가진 황해도에 불침항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서해함대사령부는 공기부양정과 고속상륙정 위주로 구성했다.

수상 전력은 소형경비정, 어뢰정, 유도탄정 등 소형 고속함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군 진출 지원과 연안방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수중전력은 로미오급 잠수함과 잠수정 등 70여 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상함 공격, 해상교통로 교란, 특수전 부대 침투 지원, 기뢰 부설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고래급 잠수함을 건조하여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SLBM) 실험을 진행하였다. 상륙 전력은 고속상륙정, 공기부양정 등 250여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전 부대를 남한 후방지역에 침투시켜 주요 군사 전략 시설을 타격하고 중요 상륙 거점지를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3.1.3 북한 해군 기지와 편제

북한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동서로 양단된 긴 해안을 갖고 있고 한국과 대치중이다. 따라서 북한 해군은 인접국 한국에만 주력하는 작전과 군사력을 건설해왔고, 이로 인하여 연안 방어 전략의 소형함 위주의 현대 해군으로 발전해왔다. 이에 추가하여 북한은 잠수함을 획득해서 한국의 중요한 해

상교통로를 파괴하고, 유사시 한국으로 유입되는 병력과 장비의 증원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이유로 북한은 독특한 편제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동해함대사령부(597연합군부대)는 함경남도 낙원군 퇴조리에 위치해 있으며 잠수함, 중형호위함 위주 운영, 7개 전대 편성, 22개 기지를 가지고 있으며, 22개 기지는 나진시, 김책시, 어랑군 무계포, 화성군 부암리, 이원군 차호, 신포시 마양도(2), 낙원군 퇴조(2), 문천시 송전, 원산시(8), 안변군 황토도(잠수함훈련소), 고성군 장전에 위치하고 있다. 나진급 531함을 기함으로 하며 570여척의 함정이 소속되어 있다. 동해는 평균 수심이 깊어 47여척 다량의 잠수함과 공기부양정 60척을 보유하고 있다. 동해전 대배치는 제1전대 강원도 원산시(상륙정, 수송선 주둔), 제3전대가 함경남도 이원군 차호리(잠수함), 제4전대 함경남도 신포시 마양도(잠수함 167군부대), 제5전대 강원도 김책시(잠수정, 중형 경비정 주둔), 제6전대 강원도 고성군 장전리(동해남단), 제13전대 강원도 문천시 문천리(잠수함, 공기부양정 291군부대), 제22전대 함경남도 낙원군 퇴조리(사령부, 해상저격여단)에 각각 주둔하고 있다.

서해함대사령부(587연합군부대)는 평안남도 남포항에 위치해 있다. 18개 기지와 나진급 631함을 기함으로 420여척의 함정이 소속되어 있다. 서해는 평균 수심이 낮아 동해함대사령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잠수함 전략(23척 보유)이 약하다. 하지만 반대로 서해 특성상 갯벌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공기부양정(70척 보유) 전력은 동해함대사령부보다 앞서고 있다. 서해전대배치는 제2전대가 황해남도 해주시(잠수함 전진기지) 제7전대 황해남도 과일군 비파곶(1차 연평해전 소속부대), 제8전대 황해남도 웅진군 사곶도(2차 연평해전 소속부대, 8개 편대), 제9전대 남포특별시 항구구역 초도(육상전력 포함 6만여명), 제11전대 남포특별시 남포항(천안함 폭침 잠수함 소속부대), 제12전대 평안북도 염주군 다사리(공기부양정 부대)에 각각 주둔하고 있다.

함정수리소는 동해에 8개, 서해에 5개가 있으며 조선소는 전국적으로 총 7개가 배치 되어있다.

3.2 북한 해양경비대

3.2.1 북한 해양경비대 창설 과정

북한은 1988년 조선인민경비대를 국경경비대와 해상경비대, 대상물경비대(노동당청사, 평양시 중요 국가기관, 발전소 등), 철도경비대 등 4개의 경비대로 분리하였다. 이 중에서 대상물경비대는 사회안전부(지금의 인민보안성)에 소속되고 국경경비대, 해상경비대 등은 인민무력부에 소속되었다. 1991년 국경경비대는 다시 인민무력부에서 독립하고 해안경비대(명칭변경)는 해당 지역의 군단 사령부에 배속되었으며, 1994년 현재 조선국경경비대로 완전 독립하였다.⁸⁾

1980년 초반까지만 해도 북·중 국경선에 경비를 세우지 않았다. 1984년에 경비를 세우라는 방침이 하달되어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 산하에 국경경비총국을 두게 되었다. 사실 이 부대는 해안, 해상, 철도, 터널, 교량, 방송국 등의 경비를 담당하는 것이 주 임무였다. 1992년에는 국가안전보위부가 맡았던 국경경비임무와 해안경비임무가 인민무력부로 넘어갔다. 국경경비대는 인민무력부 산하 국경경비사령부에 소속되었고 해안경비대는 해당 지역 무력부 군단에 소속되었다.⁹⁾

3.2.2 북한 해양경비대 현황

현재 해안경비대는 인민무력성 소속으로 전국 5개 해안경비여단을 보유하고 있고, 병력은 대략 3만명 가량이다. 북한 당국이 15년 5월부터 대다수 해안경비대 병력을 여성 군인들로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족한 남성 병력을 대체하기 위해서라는데 기존 남성들로 이루어졌던 해안 경비대 병력은 휴전선 가까이에 배치하고 해안경비를 맡았던 부대들은 원산, 사리원 일대로 이동했다. 그러나 해안경비를 맡았던 남성군인들이 독립적인 부대로 편성돼

8) 김승철(2004), “북한의 국경경비대 실태”

9) 김만섭(2006), “국경경비대는 밀수와 관련된 일을 통해 부수입원을 얻는다”

군사분계선 가까이에 배치되었는지 아니면 부대가 해산돼 전방군부대들의 모자라는 인원을 보충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북한이 이렇게 해안경비대를 기존의 남성군인들에서 여성군인들로 빠르게 교체하고 있는 사정은 ‘고난의 행군세대’가 전면에서 등장하면서 군복무에 적합한 체격을 갖춘 남성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해안경비대 무력이 갑자기 남성 군인들로부터 여성 군인들로 교체되자 북한 현지 주민들 속에서는 긴장과 우려가 나타나며, 일각에서는 해안경비대가 여성들로 교체돼 인민군의 전투력이 현저히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투력이 강한 대규모의 남성병력이 군사분계선 가까이에 배치되고 있다는 정보가 돌면서 전쟁이 나는 게 아니냐는 북한 내부의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기존 남성들로만 이루어졌던 북한의 해안경비대 병력은 어민들의 수산물을 빈번히 수탈하기 때문에 영양상태가 비교적 좋고 해안가의 복잡한 지형에 익숙해 전투력도 매우 강하다. 기본적으로 해양경비대는 북한군과 동일한 강도의 훈련을 받는다. 해군과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분리된 소속이며, 해안을 둘러싼 경계 지역을 경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주로 야간에 근무하는 부대로서 은밀하게 잠복 초소를 만들어 놓기도 한다.

출항하는 배의 검문은 북한 해안경비대의 필수 업무 중 하나이다. 남한 해경 파출소의 주 업무 중 하나인 어선 입출항 신고 및 낚시 어선 관리, 레저 선박 관리 등과 유사 업무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어선은 출항 1시간 전 탑승자를 경비대에 보고해야 한다. 해안경비대가 검문하는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어선에 뇌물을 요구한다. 출입항 검문할 때 사소한 것까지 꼬투리 잡아서 출항을 지연시키고 뇌물을 요구하는 것이다. 식량난으로 인해 군부대 배급이 원활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약탈하는 일이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다. 해안경비대는 북한 민가와 가까워 육지의 작물들과 바다의 해산물이 풍부하여 다른 군부대보다 식량 조달이 풍부하다. 북한의 해안경비는 북한의 해양치안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해안경비대가 해안선 경비업무의 주무부처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에서 경비업무는 북한의 해군이 관장하고 있다.

3.3 북한 인민보안성

3.3.1 인민보안성의 기능 및 특성¹⁰⁾

북한의 사회안전단속법에 따르면, 인민보안성의 주요 임무는 북한의 주권과 사회주의 체제, 헌법적 권리,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 이는 조선노동당의 독재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감시·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1999년에 수정된 사회안전단속법의 단속대상에서는 인민보안성의 임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경제생활, 상업 질서, 외화벌이, 노동행정질서, 퇴폐물, 의료행위 등을 추가로 밝히고 있다. 인민보안성은 해양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와 해양경비업무를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인민보안성은 부대부문과 보안부문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부대부문 근무자를 경비대 군인, 보안부문 근무자를 보안원이라고 호칭한다. 부대부문 경비대 군인들이 해안의 경비를 담당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인민보안성의 임무는 광범위하며 이를 범주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수령 옹호 보위사업

수령 옹호보위사업은 인민보안성의 가장 핵심적 임무이자 절대과업이다. 이는 국가수반인 김정은을 옹호·보위하며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인민보안성은 정권 및 체제 유지를 위해 반국가·반혁명 행위를 감시하는 업무를 최우선으로 한다. 또한, 김정은의 경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국가보위성과 호위사령부를 지원하여 수령 호위 사업을 간접 수행한다.

2) 당·국가 보안사업 총괄

인민보안성은 김정은과 조선노동당의 노선을 옹호·관철하기 위해 국가보안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기밀문서 보관·관리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비훈련국에서는 도·시급 당청사 등 국가주요시설물을 경비하며

10) 전현준(2012),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노동당 및 내각 간부들의 사택 등 주요 인사들의 호위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제5차 주관으로 전시 주민 및 공장기업소 소개·관리 업무와 전시 대비의 반항공·화학 훈련, 주민대피 훈련 등을 수행한다. 인민보안성은 북한 중앙은행권 발행 공용화폐를 제작하는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경제 감찰국은 협동농장, 공장기업소 등에서 국가경제 정책업무를 계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3) 치안질서 유지 및 사찰

1990년대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 및 외부 문화의 유입 등으로 각종 범죄 등 사회 일탈행위가 증대하였다. 인민보안성은 산하 도·직할시 인민보안국, 시·군 보안부, 리·동 분주소 등 지방조직을 활용하여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한 수사 활동 및 범죄 예방 활동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경제난 심화로 증가하고 있는 단순범죄가 아닌 자본주의 성향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보위성 등과 합동하여 비 사회주의적 요소를 적발하기 위한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민보안성 요원들이 각 학교, 직장, 인민반 등 침투하지 않은 곳이 없으며 비밀리에 수많은 정보망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인민보안성 요원은 1인당 15-20명의 정보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각 정보원은 또 다른 하위정보망을 관리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이중으로 감시받고 있다.

4) 주민 사상 동향 감시

인민보안성은 정권 및 체제 수호를 위해 주민들의 사상 동향을 감시하는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치안질서 유지와도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북한주민 통제를 위해 공민증 발급, 주민등록사업 관리, 주민성분 분류, 주민들의 거주이전, 이동을 직접 통제·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인민보안성 산하 지방조직인 시·군 보안부는 주민등록과를 통해 만 17세 이상 주민에 대한 공민증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 주민에 대한 공민등록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북한 주민의 퇴거 전출, 거주지 변동 사항, 여행증 발급 등 주민 이동 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5) 국가 주요 시설물 건설 및 도로 관리

인민보안성은 소속 부대와 산하 지방조직을 통해 국가의 주요시설물을 직접 건설하며 도로를 관리하는 국토 관리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산하 독립 부대인 7 총국(일명공병총국)을 통해 김정은 특각 등 국가 주요 시설물을 직접 건설하는 특별 공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남한의 경찰이 담당하지 않는 교화사업, 지진관리, 소방사업, 지하철 운영관리, 자체 외화벌이 사업, 주소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본부 산하의 교화국을 통해 북한 전역의 교화소와 노동교양소를 통제, 지도, 감독하는 등 일반 범죄자들을 수용·관리하는 교화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관리소는 국가보위성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2 개의 관리소는 인민보안성에서 관리하고 있다. 외화벌이를 위해 금강관리국을 설치하여 외화벌이 사업소를 직할시와 도의 보안국까지 확대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1998년 2월부터는 주소안내소를 설치하여 실종자부터 이산가족까지 찾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3.2 인민보안성의 조직도

1) 인민보안성¹¹⁾

북한의 인민보안성은 남한의 경찰청에 해당한다. 2000년 4월 6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3차 회의 3일차 회의에서 사회안전성의 명칭이 인민보안성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최근 2010년에는 인민보안부로 변경되었다가, 2016년에 다시 인민보안성으로 환원되었다. 인민보안성은 평양의 중앙조직 및 직할시와 도의 보안국, 시·군의 보안서, 그리고 우리나라 파출소에 해당하는 하부조직인 분주소로 조직되어 있다.

인민보안성 직속으로 정치국(조직부와 선전부)과 부상(약 10명), 보위부, 그리고 참모장이 자리하고 있다. 참모장 밑에는 수사국, 감찰국, 예심국, 작전국, 건설국, 호안국, 교화국, 주민등록국, 경비훈련국, 병기국, 통신국, 후방국, 재정국, 금광관리국, 자재관리국 등 15개의 국(局)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외사처,

11) 신윤창외(2017), “남·북한 치안체제 비교 및 통일대비 통합방안: 남한의 경찰청과 북한의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교육처, 운수처, 군의처, 반항공처, 경리처, 상표인쇄처 등 7 개의 독립처가 자리 잡고 있다. 그밖에 독립부서로서 첩보보안국, 중앙기관보안부, 제2경제위원회 보안부, 7총국(공병총국), 8총국(도로총국), 국토총국, 지하철도관리국, 116기동대, 정치대학, 병원, 압록강 체육단, 전자계산기연구소, 답사관리소, 기요연락소 등이 소속되어 있다.

인민보안성에서 해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수사국, 호안국, 경비 훈련국으로 예상된다. 해양에서 발생한 사건은 일반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국은 북한 형법에서 규정한 일반 범죄를 담당하도록 되어있다. 호안국은 자연에서 발생한 재해·재난사건을 담당함으로 해양경찰의 해양 오염방제 업무의 성격을 가진다.

2) 지방 보안국

북한의 직할시 및 9개의 도(道)에 보안국이 설치되어 있다. 남한의 지방 경찰청에 해당한다. 보안국에는 감찰과, 수사과, 예심과, 교통과, 후방과, 2부, 통신과, 경리과, 총무과(대열과), 호안과, 주민등록과, 작전과, 그리고 반탐과로 구성되어 있다. 예심과는 수사과와 감찰과에서 들어난 결과들에 대해 정확한 진상을 조사·확인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호안과는 화제를 비롯해 일체의 재난사고와 관련된 임무를 관장한다. 2부는 북한 주민들의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일을 담당한다. 그리고 반탐과는 체제불만세력을 색출하는 일을 한다.

3) 보안서

북한의 시·군·구역에 설치된 보안서는 약 200여개이다. 통상적으로 상좌나 대좌가 보안서장을 맡고 있다. 보안서는 수사과, 감찰과, 예심과, 교통과, 주민등록과, 호안과, 그리고 2부가 업무를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보안서의 각 과에는 중좌 내지 소좌급의 과장, 부과장, 담당 지도원 3-5명 등이 있는데 수사과는 사건발생시 수사(주로 강력범죄)와 구류장을 관리하고, 감찰과는 일반 및 경제감찰과로 나누어진다. 일반감찰은 일반 경범죄자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경제감찰은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해상에서 발생한 범죄도 수사과에서 처리한다. 예심과는 감찰과 및 수사과에서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범

죄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교통과는 책임지역의 차량 질서유지, 면허증 발급, 벌금 부과업무를 담당한다. 주민등록과는 주민등록과 공민증 발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호안과는 자연재해나 화재 등과 관련된 사고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장 분단국가 해양치안기관 통합 사례

4.1 경찰통합의 개념

경찰통합은 2개 이상의 경찰시스템을 하나의 공동기능 및 조직체제로 통합하는 작업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통합은 미시적 차원에서 일선 경찰관서의 수평적·수직적 통합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가통합의 거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찰통합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거시적 차원의 경찰통합 개념은 이질적 국가체제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경찰체제를 통합국가의 이념에 적합하도록 기능과 구조를 외적으로 통합함과 아울러 내적 측면에서 조직 문화 및 구성원의 심리적 동질화를 이룩하는 작업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거시적 차원의 경찰 통합 작업에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조직과 인력 및 기능의 통합, 지휘명령 체계의 통합, 무기 체계의 통합 등이 포함된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이념과 가치를 포함한 경찰정책 기초의 재정립이 포함되며, 질적 조직 문화의 통합, 구성원의 내면적 가치관의 통합 및 일체감 형성 등이 포함 될 것이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경찰통합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통일국가의 이념에 부합한 새로운 경찰 기능 및 치안 목표의 설정, 치안 목표와 경찰 기능의 재정립 관련 법규의 통합이다.

둘째, 통합된 지휘명령체계의 정립을 위한 조직·인력 및 무기체계의 통합, 경찰 단위조직의 통합과 지휘체계의 일원화, 인력과 인력양성체제 및 교육훈련체제의 시설, 장비와 물자의 통합이다.

셋째, 조직 문화의 통합 및 구성원의 심리적 동질화를 위한 재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마련, 새로운 조직문화의 창출, 심리적 동질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이다.

경찰 통합은 군사통합과 함께 국가·사회적인 통합의 완성도를 결정해주는

판별 기준이다. 그러나 통합 단계 이전에 이를 위한 사전 조치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경찰의 남북한 인적왕래의 증대에 따라 형사 사법의 공조차원에서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분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통합 논의가 아니라 주어진 여건 속에서 평화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4.2 경찰통합의 유형

경찰통합의 유형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편이다. 경찰통합의 유형은 분단국의 통합 사례를 중심으로 한 유형 분류와 의사소통 형태에 의한 유형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형태에 의한 유형 분류를 중점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4.3 독일의 통합

독일의 분단은 2차 대전 패전에 따라 연합국들에 의해 분단이 결정된 후 미·소의 냉전구조 하에서 동·서독간 긴장과 대립이 심화되었다. 1980년대에 소련 등 동구권 국가들의 경제 붕괴로 동독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으며, 1989년 6월부터는 동독 주민들의 대규모 이탈이 발생하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1989년 8월부터 11월까지 난민 수는 20만 명에 이르렀다. 동독 정부로서는 탈주 상황을 더 이상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후 서독의 콜 수상은 동독과 통일 협상을 통해 연합구조를 거쳐 통일 연방 국가를 형성하는 독일통일 3단계 통일방안과 더불어 연방제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10개항을 발표하였다. 독일 통일은 20세기 국제 정치에 하나의 뚜렷한 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이다. 독일 통일의 역사적 의미는 먼저 냉전시대의 종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냉전시대의 종식은 1945년 이후부터 소련의 붕괴 및 베를린 장벽의 철거까지 이어져 온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대립을 독일의 통일로 말미암아 종식되고 새로운 질서 구축의 시대로 변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Table 4는 독일의 통일 내용을 연도별로 정리한 표이다.

Table 4 독일 통일 내용 연도별 정리

시기	내용
1980년대 후반	집단 이주사태 시작
1989.11월	베를린 장벽의 붕괴
1990년 초	장벽 개방으로 자유왕래가 실현되어 치안문제 발생
1990.3월	독일 통합 및 자유 총선거 실시
1990.6월	서독 내무장관회의에서 동베를린을 서베를린에 통합한다는 협정이 체결
1990.9월	‘경찰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법’ 제정
1990.10월	동독 중앙정부의 해체 및 동베를린과 신연방 5개 주정부에 귀속

저자가 본문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 함.

4.3.1 독일 해군

독일 해군은 1848-1852년의 독일 함대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북부 독일 연방 해군으로 발전한 프로이센 해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독일은 내륙국가로 면적에 비해 해안선의 길이(8,693km)가 짧다. 한반도와 비교하였을 때 국토면적은 1.5배 크지만 해안선의 길이는 1/2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정학적 이유로 2차 세계대전에서 약한 해군력을 극복하고자 영국에 대한 전면 해안 봉쇄를 선포할 때 대부분의 잠수함 작전을 대서양 항로에서 전개하였다. 1945-1956년 제국해군의 구성은 수뢰 제거 본부와 후임 기관이 독일 해군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1956년, 서독이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새로운 해군이 설립되어 연방 해군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후 1990년 독일의 통일로 동독의 해군과 합쳐지면서 현재의 독일해군이 되었다.

서독의 군사통합을 위한 노력은 주변국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과 독일군 자체 통합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통일 노력을 위한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서 서독 통일외교의 핵심은 관련국들이 통일독일에 대한 안보 불안감을 제거하는

것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으로 이루어진 전승 4개국 점령체제의 공식적 종결, 동독 흡수 통합과 통일 독일의 NATO 잔류에 대한 소련의 동의, 통일 동독의 군사적 위상, 독일-폴란드의 국경문제, 외국군의 철수 문제 등이 주요 과제였고 2+4회담과 영수회담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1990년 7월 15일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서독의 콜 수상의 정상회담에서, 통일 독일군 규모를 37만으로 하고 94년까지 소련군 철수 및 통일 독일군의 NATO 잔류 등이 합의된 후, 서독 정부는 통일시 동독 군을 완전 해체시키되 동독 인민군 5만여 명을 연방군에 편입시키면서 동부지역 사령부 설치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연방국방부산하에 통합대비단을 설치하여 동독 국방부와 접촉을 통해 주요 결정사항 준비, 현황 파악과 아울러 지휘권 인수를 준비시켰으며 신설 예정 동부지역 사령관을 임명하였다.

동부지역 사령부는 동독군을 인수하여 부대 안전과 지휘 체제를 보장하고, 부대를 단계적으로 해체하였다. 병력은 감축 조정하고 무기, 장비, 물자와 탄약을 인수 관리하며 새로운 연방군 부대를 창설, 소련군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철수를 지원하라는 내용으로 동독군 부대의 지휘와 해체 및 편입을 총괄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통일 후 군사통합 과정을 보면, 1990년 10월 3일 통일이 되면서 기존 동독 인민군의 모든 명령과 지휘권은 독일 연방군에게 인계되었다.

서독에 편입된 동독군에는 서독의 법과 규정이 적용되었고 동독 지역에는 독일연방군 동부지역사령부가 창설되어 기존 동독인민군의 모든 명령지휘권을 접수하고, 주된 임무인 동독인민군의 해체 및 개편에 착수하였다. 동독군으로부터 인수한 육군 2개 군사지역을 2개 방어지역사령 부로, 6개 사단을 6개 여단으로, 해군 3개 전단을 3개 전대로, 공군 2개 사단을 1개 비행사단으로 개편하여 1991년 6월 30일부로 독일 연방군 육·해·공군 지휘체제로 편입시켰다.

분야별 군사개혁의 내용은 첫째, 조직과 편성에서 공통 임무를 통합하여 합동성을 강화하고, 둘째, 인력구조와 인사방침 및 제도 분야에서 군의 인력을

줄이고, 셋째, 전력증강 분야에서 장비를 현대화하여 수단을 향상시키고, 마지막으로 민간경제의 제휴 및 협력을 통하여 획득과 운영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하였다.

통일독일의 군 통합 역시 동독인민군이 강제적 또는 자발적으로 해체되었고 서독연방군으로 흡수되면서 일원형의 군사통합 형태를 띠게 되었다. 통일과정의 최종단계에서 실질적인 통일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통합의 일환으로 약 1년간에 걸쳐 4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1단계는 준비단계로서 약 3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9년 11월 9일 동·서 국경 개방이후 동독군은 80%였던 작전부대 상주병력을 50%로 감축시키고, 여행여권 및 신분증에 대한 본인소유를 허용하였으며, 서독에 대한 대민 접촉, 자유여행, 서독TV의 시청 등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는 사회주의체제에 노출되었던 동독군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야기 시켰다. 1990년 3월 18일 동독에서는 최초 자유민주선거가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동독에도 민주정부가 수립되었다. 1990년 5월 2일에는 구 동독의 목사 출신인 동독 국방부 장관이 통일독일 이후 2개 군이 각각 존재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1990년 6월 13일에 서독 국방부장관은 통일독일에는 단일군이 존재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 국방부는 군사 통합 시 수행해야 할 과제 450개를 도출하였다. 1990년 7월 1일 서독연방군과 동독인민군은 각 부대와 기관별로 자매부대를 지정하여 최초로 상호교류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공식적인 접촉 이후 동서독군은 서로의 극단적인 차이점을 인식하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서독 국방부는 본격적인 통합준비 작업을 실시하였다. 국방부 각 부서에 군사통합 실무반을 편성하였으며, 1990년 8월 17일 연락사령부를 동독국방부로 파견하여 인수를 위한 작업을 준비하였다.

2단계는 인수단계로, 약 1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1990년 8월 23일부터 연락사령부는 동독 국방부와 접촉을 유지하면서 인수 작업을 개시하였고, 8월 25일 서독국방부는 서독지역에 동부사령부를 편성하였다. 1990년 8월말부터 9월 사이에 서독군은 동독군 각급 부대에 현장확인팀을 파견하여 군사통합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군사통합계획을 수립하였고, 동독군의 인수를 준비하였다. 9월 10일에는 서독 국방부장관이 동독군 병력에 관한 계획에서 동독군 5만 명을 인수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9월 19일에는 연방군 동부사령부 선발대를 동독지역에 파견함으로써 연방군 동부사령부의 임무수행을 준비하였다. 9월 24일 동독은 바르샤바조약기구 탈퇴에 서명하였고, 동독 국방부장관은 동독장군 및 제독에게 10월 2일부로 전역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로써 동독 국경수비대는 9월 30일에 해체하였다. 동독 국방부장관이 일반 명령을 통해 1990년 10월 3일 시를 기해서 동독 군인 103,000명을 근무해제 시킴으로써 기존의 병력규모 17만 명의 동독군은 1990년 10월 2일을 마지막으로 공식 해체된 것이다.

3단계는 개편단계로서 약 6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1990년 10월 3일 연방군 동부사령부는 장교 1200명과 하사관 800명의 서독 연방군 간부를 동부 사령부 예하 동독부대 지휘관 및 참모로 배치하였다. 이로써 구동독 군의 지휘권을 인수하였고, 동독군 소속 의무복무 군인 4만 명과 장기 직업군인 5만 명을 인수하였다. 연방군 동부사령부는 동독군의 지휘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동독군의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을 고문으로 하여 개편작업을 실시했다. 공산주의 군대가 가지는 특성상 모든 정보는 최상급 지휘관에서 종합되기 때문에 동독군을 해체하는데 이들의 역할은 필수적이었다.

정착 단계인 4단계는 1991년 4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연방군 동부사령부는 1991년 4월 1일 개편된 동독 육·해·공군에 대한 지휘권을 연방군 육·해·공군 본부로 인계하였다. 6월 30일 조직개편을 완료하면서 각 군 총장과 합참차장, 의무사령관에게 지휘권을 인계하고 통합된 연방군의 지휘체계를 확립하였다. 독일연방군은 자체 통합결과를 그동안에 대두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독일연방군은 군사통합의 후유증을 바르게 극복하고 있으며, 구동독 주민의 관심 사항인 동구지역의 경제발전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함으로써 통일연방군이 동독지역에서 필요한 존재임을 부각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서독 해군이 동독 해군을 흡수하면서 동독해군은 1/2로 병력이 감축되며 통일 이후 해 군력은 3만 명 선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독일은 내륙

국가라는 지정학적 요소 때문에 동·서독 모두 국방력에 대한 해군비율이 10%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독 해군이 동독 해군을 흡수할 때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동독의 물자 규모와 종류에 대한 정확한 공식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동·서독간 병력 운영방침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국방물자를 유지 및 관리해온 동독의 기존 전문 인력이 급작스럽게 이탈함에 따라 물자 집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독인민군의 무기 체계는 미래 소요와 안전성, 경제적 효율성을 반영하여 분류해 처리되었다.

동독 해군 함선 총 192척과 기타 함선 중 고속정 13척만이 계속 활용하고, 약 100척이 민간선박으로 구조변경 후 매각되었고, 나머지도 민간 용도로 처분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 해군을 해체 시킬 때에도 발생할 것이다. 북한의 해군 함정은 노후화가 심하여 남한의 해경이나 해군에서 가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폐기처분될 것으로 예상된다.¹²⁾

4.3.2 독일 경찰

독일이 통일되고 나자 많은 주민들의 왕래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중 치안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다. 1990년 3월 18일 동독에서 의회 첫 자유총선거가 실시되었다. 1990년 10월말에 신연방주의들의 중요한 업무는 시작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법원과 검찰 그리고 경찰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었다. 특히 경찰은 조직정비, 인적정비, 물적 정비를 해야 했다.¹³⁾

그 당시 독일은 서독의 연방범죄수사청에서 서독 경찰이 동독 경찰을 지원 하도록 하였고, 이에 동독에서는 내무부 장관 명령을 통해 경찰본부를 구조와 조직 면에서 바꾼 것만은 아니고, 중앙범죄청하에 지방 차원에서 지방범죄청들이 구성되었고, 이들 지방범죄청들에 많은 권한이 이양되었다. 이 시기에 동독의 중앙범죄청과 내무부는 서독의 연방범죄 수사청과 내무부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게 되었다. 구 동독지역의 신설 5개주가 연방에 가입하면서 경찰

12) 조동진(2003), “남북한 군사통합방안:해군을 중심으로”

13) 남궁승필(2003), “남북한 통합경찰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통합 역시 추진되었다. 연방경찰 차원에서는 주범죄수사국의 설치, 국경수비대의 통합 작업이 진행되었다. 베를린을 제외한 신설 5개주 경찰은 구 동독출신의 인민경찰의 재임용 및 심사 위주의 통합이 진행 되었으며, 베를린의 경우는 서 베를린 경찰에 동 베를린 경찰이 통합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따라서 주 단위 경찰통합 방식은 베를린 방식과 나머지 신설 5개주 방식으로 대별된다.

1980년 후반 집단이주 사태가 시작된 이후 경찰은 경비업무 등에 참여하게 되었다. 1990년 9월 말까지 장벽개방으로 동서독 주민들의 자유왕래가 실현되자 이에 따른 치안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제 경찰당국 간의 접촉이 시작되었고 양 경찰 간에 업무협조를 위한 직통전화 및 무선 통신망이 개설되었다. 1990년 6월 서독 내무장관회의에서 동베를린을 서베를린에 흡수 통합하기로 하였다. 1990년 7월 동서독 간 국경의 전면 개방, 국경 이용 범죄에 대한 공동대비 등에 합의를 하였다. 1990년 9월 민주적으로 선출된 동독의 인민회의에서 ‘경찰의임무와 권한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특히 베를린의 경우, 1990년 6월 초부터 10개월간 베를린 내무성에 경찰 통합을 위한 준비기획단을 설치·운영하였다. 각 주에 관할권이 있는 경찰권은 독일 통일의 날인 1990년 10월 3일 0시를 기준으로 하여 동독 중앙정부의 해체와 동시에 동베를린과 신연방 5개 주정부에 귀속되었다.

1989년 동독의 평화로운 혁명에서부터 재통일까지에 일어난 구조적 변화에서 생겨난 주요 문제는 중앙범죄청의 업무와 권한이 연방 범죄수사청과 주 경찰의 과제와 분명히 구별되는데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통일조약 제 13조에서는 여러 주가 공동으로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동의 기구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1990년 10월 통일독일 조약의 발효와 더불어 동독의 중앙범죄청은 기능을 상실하고 새롭게 신설된 5개 주의 공동범죄청이 변화된 책임, 기능, 과제 및 활동방식으로 구 동독지역의 경찰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동독의 국경수비업무는 국방부 소속인 국경경비대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서독 국경수비대는 내무부 소속으로 연방경찰조직이었다. 통일 당시 동독 국경수비대 실제 인력

7,000명은 통일조약에 따라 연방국경수비대에 편입되었으며, 연방국경수비대 동부 지역대는 인수받은 인력의 재심사를 비롯하여 소속원에 대한 재교육 및 과거행적 조사 후 부적격자를 배제하였으며 신연방주의 출신자 중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하였다. 지휘부중 5%는 서독 연방국경수비대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들로 배치하였다.

신설된 신연방주의 경찰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인민경찰을 인수하였다. 신설된 조직에 기존인력이 재배치되었던 고위직은 대부분 해직되고 그 자리에는 서독출신 인사들이 임명되었다. 인수된 과거 인민경찰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적성, 능력, 전문성, 연령, 계급 등을 기준으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였다. 인민경찰은 통일조약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동독경찰기관이 연방 또는 신연방주 관하에 속하게 됨에 따라 신연방 주경찰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동독 경찰조직 및 인원을 그대로 구성하였다.

인수된 동독경찰에 대한 재교육은 초기에 기본 교육은 단축된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식 교육기관으로 정상화되었다. 교육내용은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으로 경찰공무원 직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분야별 법률 및 전문지식의 습득 등이 중점적으로 실시되었다. 점진적인 노력과 대화로 이루어낸 통일이었지만 동·서독간의 경찰 통합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먼저, 약 90%에 달하는 동독 경찰을 흡수함에 따라 특히 베를린 시에서는 인수된 동독의 인민경찰관에게 지급할 통일독일 경찰관의 복장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 거리에서 2개의 상이한 제복을 착용한 경찰을 볼 수 있었다. 새로운 제복의 지급은 1993년에서야 완료되었고, 이를 위해 약 700만 마르크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둘째, 동독의 경찰이 통일독일의 경찰관으로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심사를 받아야 했는데, 심사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동독 인민 경찰관들은 자신이 경찰관으로 재임용될지 여부와 미래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이는 유능한 경찰관들로 하여금 사기업 등으로의 인력유출 문제를 초래하였다. 또

한 50세 이상 경찰관은 해고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통일 이후 10년 동안 경찰관이 퇴직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신규경찰관이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된 것이다. 그 결과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 교육을 받은 젊은 경찰관의 입직 기회가 줄어들어 경찰조직 내 심각한 연령불균형 사태가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는 동독의 인민경찰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임용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민주법치국가의 경찰이 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셋째, 동독 시절 이루어졌던 인민경찰에 대한 정치적 세뇌로 인해 동·서독 경찰간의 융화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보다 더 통합을 저해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동독 경찰관들의 경찰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현장에서 근무 하는 하급직 경찰관의 경우 더욱 심했다.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스스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어난 상황을 먼저 출동본부에 보고한 후 본부에서 하달되는 구체적 지시에 따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결정해 왔던 것이다. 예컨대, 술집에서의 싸움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사소한 사안들의 경우에도 현장에 출동한 동독출신 경찰은 독자적인 결정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들은 먼저 상부에 상황을 보고한 후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받아서, 심지어 단순한 경범죄조차 어떤 스티커를 발급해야 할지에 지침을 받아 행동하며 책임감 없이 기계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던 것이다.

넷째, 이러한 동독 출신 인민경찰의 낮은 직무역량은 그 자체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독출신 경찰관에게 감정적 저항을 불러일으켜 내부적 지휘 계통상의 문제로 비화될 소지를 안고 있었다. 반대로 인민경찰 출신의 경우 서독 출신 경찰 동료들의 태도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경찰공동체 형성을 위해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다섯째, 상당수의 동독 인민경찰관을 통일독일의 경찰로 인수함으로 인해 동독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같은 지역 및 경찰관서에서 근무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동독지역을 잘 아는 경찰인력 부재와 같은 맥락으로 야기된 문제이지만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결코 쉽게 수긍

하기 어려웠다. 특히 동독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의 경찰은 체제유지를 위해 주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억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인적 청산의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부실한 검증자료 등으로 인해 완벽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다.

여섯째, 동독 경찰의 직무역량을 서독 경찰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동독 경찰의 직무수행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3 단계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시행되었지만,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인민경찰관들은 통일독일의 경찰로 재임용되기 위하여 강한 학습의지를 보였지만, 학습능력에는 많은 문제점을 보였다. 인민경찰관들은 적지 않은 나이에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교육과정을 수료해야만 한다는 점과 이들이 받았던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 등이 서독의 교육과 비교해 크게 뒤처진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다. 교육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교육기자재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고, 강의를 책임질 교관 요원을 확보하는 데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동·서독 경찰 간 보수의 차이는 경찰의 완전한 통합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동독 인민경찰에게 지급된 보수는 통일 직후에는 서독 출신 공무원 봉급의 60%에 그쳤다. 시간이 지나면서 봉급 수준이 인상되었지만 통일이 된지 10여년이 지난 2000년대 초에도 서독출신 경찰관 봉급의 86.5%를 받는데 그쳤다. 이러한 차이는 서독 출신 경찰과 비교하여 2등 시민이라는 상대적 박탈감, 업무에 대한 소극적 태도, 나아가 경찰 동료 간 이질감을 느끼게 만들어 완전한 통합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동독지역은 통일을 통해 새로운 근대화 과정을 밟게 되었다. 공동체적 생활양식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 요소를 청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자유 획득이라는 해방감이 사회 안정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지만, 안전을 위하여 동독 주민들은 경찰이 보다 적극적이기를 기대하였다.

독일의 통일을 예로 삼아 우리나라도 독일식으로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일

하는 경우에 북한을 남한 방식으로 단순히 10-11개 광역시·도 경찰청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기보다는 북한 현실에 맞는 치안 행정을 수행해 나가야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신격화시킨 김씨 부자들의 독재 하에 오랜 세월을 지내왔기 때문에, 인적인 요소의 정리가 중요한 일이 될 것이며,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하며 점진적 통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4.4 예멘의 대등적 통합 사례

16세기 북예멘은 자이드 왕조가 자리 잡고 18세기 이후 남예멘 지역은 부족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세력권으로 분리된 상태에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북예멘에는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섰고, 남예멘에는 맑스-레닌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체제가 자리 잡게 되었다.

남북예멘은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며 상대방을 통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많은 전쟁들을 겪어왔고 여러 아랍권 국가들이 중재하였다. 남북예멘은 무력충돌-평화협정-통일합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던 중, 1990년 5월 통일을 선포함으로써, 평화적 합의에 의한 통일을 이루었다. 예멘이 합의에 의해 통일을 이룬 것은 남북예멘 지도자들 간 권력 배분에 대하여 합의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통일 조약에서 남북 간의 대등한 배분을 지양하였으나, 지도자들은 정치적 통합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통일 후의 사회 통합 정책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정부기구는 비효율적으로 변질되었고, 사회통합의 지고로 내세운 이슬람 교리에 대해 남북예멘 주민들 간 갈등이 노출되었다. 주민간 불신이 증가하고 갈등이 첨예화되어 반정부 시위 폭동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위기를 불식시키기 위해 1994년 남북예멘의 지도자들은 다시 회동하고 권력배분 문제 등 위기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에 다시 서명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게 된다. 최근 예멘의 치안 상황을 보면, 1990년 남예멘과 북예멘의 통일이 후에도 남북 갈등과 정국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 무기조사기관인 ‘스몰

암스 서베이'의 2007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이 소유한 총기 수는 1,700만정이며 인구 중 4분의 3이 총기를 보유하고 있다. 치안 불안과 예멘 지방 부족의 악습인 납치 행위도 총기 소유를 부추기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테러도 빈번히 일어나고, 예멘의 치안은 총체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다. Table 5는 이러한 예멘의 통합 내용을 연도별로 정리한 표다.

Table 5 예멘 통일 내용 연도별 정리

시기	내용
1989년	북예멘, 남예멘 의 정상회담 및 통일헌법승인
1990.5월	통일선포
-	정부기구의 비대화
1994년	남북예멘 지도자들의 재회동
-	이후로 정국은 계속 불안

제 5 장 통일 이후 남북한 해양경찰 통합 방안

앞서 설명한 대로, 독일과 예멘은 통일 후유증에 노출되었다. 통일이후의 대등한 통일에 경우에는 동질성은 높은 반면에 통합이후 정치적인 혼란을 겪었고, 통일 독일과 같은 흡수 통합형 방식 또한 내적안정성은 예멘에 비해 높았지만, 막대한 비용으로 아직까지도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다. Table 6은 독일과 예멘의 통일에 대하여 비교한 표이다.

Table 6 독일과 예멘 통일의 비교

구분		독일	예멘
체제 분단 기간		1945-1990	1967-1990 1994통일
양국관계		경제적 대립 협력	적대·협력 반복
교류협력		원활히 추진	인간교류 가능, 간헐적 협력
체제간 이질성		매우 큼	약함
발전격차		큼	약간 있음
통일요인		체제발전 격차, 정당성	외적, 경제적 환경
통일방식		평화적 흡수통일	합의통일 후 내전적 무력통일
통일이후체제		자본주의	이슬람 공화국
통일이후 문제점	정치	없음	무력대결
	경제	막대한 통일비용	저성장 악순환
	사회문화	사회통합문제상존	사회 혼란 가중

자료 : 황병덕외(199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우리는 앞서 통일을 겪은 여러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토대로 Fig. 1과 같은 방향으로의 통합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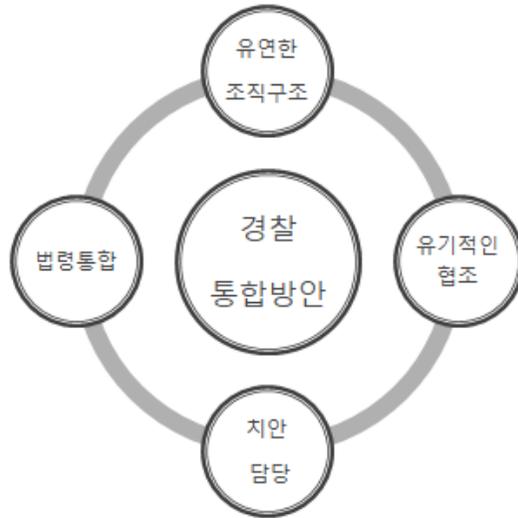


Fig. 1 경찰 통합 방안

첫째, 현재 우리나라 및 북한의 경찰 및 군대 조직의 경우, 안보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보니 서열화가 심하게 되어 있으며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통일한국의 조직에서는 서로 수평적인 구조의 조직을 통해 통일 이후 변화된 해양 환경 하에서 요구되는 해양경비, 해양치안, 해양안전, 해양환경 등 어떠한 필요에도 임무수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연한 해양경찰인력을 건설해야한다.

둘째, 경제협력의 전개 과정에서 기업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정부는 평화와 안정이라는 정치적인 이익을 얻어 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대북 경제 협력은 북한의 개방속도를 주시하면서 기업과 기업 간, 기업과 정부 간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 욕구 및 해양 리스크 기반 조직 및 인력운용이 필요하다. 2017년 4월6일 설문조사(한국갤럽)에 의하면 우리 국민 10명중 7명은 ‘우리의 바다는

안전하지 않다.’ 라고 응답하였다. 세월호 침몰사고, 천안함 폭격 등 대양 해난 사고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해양에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였다. 하여 국민들은 해양에서 위험이 있다는 자체를 사고와 동일하게 간주할 수 있고, 위험 자체를 없애는 것을 통하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욕구가 존재한다.

해양에서의 위험 요소들은 항상 존재하며, 그 위험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위험 요소들이 사고로 이어지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리스크 기반으로 해양에 접근해야한다. 해양에서 리스크는 상존하므로 사고 발생을 0으로 줄일 수는 없으므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리스크를 제어하여 한도 목표치를 조절한다.

해양경찰은 단위 경비세력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을 가진 조직으로, 해양경비법상 해양경비 활동 범주에 포함된 해양범죄 예방, 해상항해 보호, 해양오염 방제 및 해양자원 보호, 해양시설 보호, 해상 경호, 대테러, 대간첩 등의 업무를 하나의 경비 세력이 복합적인 멀티 플레이어로 임무를 수행해야하며, 때로는 이로 인해 경비업무 부담이 막중해진다. 해양치안 기관으로서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최일선의 국가조직임을 인식하고, 해양경찰의 업무, 임무 또한 이러한 리스크를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리스크 기반의 인력 양성 및 운용을 통해 일반 경찰업무와 확연한 차별성을 가지며, 중요한 사명 달성을 위해 해양경비 리스크에 대응 가능한 전문화된 특수 인력 양성 및 운용이 필요하다. 철저한 사례, 통계, 확률 분석을 통한 정량적 접근 및 현장에서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정성적 접근을 함께 활용하여, 선진 해양경비 업무 국가들의 리스크 관리 사례와 방법을 분석하고 배울 필요성이 대두된다.

넷째, 남북한 해양 법령의 통합이다. 통일국가의 법률은 단일한 국가공동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남북한의 통일은 법률의 통일과 사법 통합의 적용으로 귀결된다. 통일국가에서 해양치안 통합은 헌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통일 헌법과 그에 따라 제정된 해양치안 관련 법령에 준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기초로 한 통일국가를

예정할 경우에는 통일해양경찰은 북한의 해양치안조직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남한의 해양경찰제도와 조직을 안정적으로 재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조직은 합법적·합리적 조직운동을 위한 법률과 법령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통일 이후 해양경찰은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에서 유지되었기 때문에 통합을 위한 법령을 상호 만족한 차원에서 정비하기까지는 시행착오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몇 단계에 걸친 법령 정비를 계속해왔던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법령 정비를 해나가는 것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길이 될 것이다.

다섯째, 장비와 경찰무기 등의 통합이다. 독일통합과정에서 인민경찰과 해군의 장비는 낡고 하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때문에 동독의 장비는 계속적인 사용이 중지되거나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장비가 부족한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장비의 상태에 따라 당분간 사용하기로 결정된 경우도 있었다. 독일통일 후 4년 동안 동베를린 경찰의 장비를 서베를린 경찰의 기준에 맞게 통일시키고 새로 마련하는데 1억 마르크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먼저 통신부분을 보면 낙후된 통신기술로 인해 약 370개의 경찰 독자회선이 필요했으나 1990년 10월 1일 통합 당시까지 약 100개의 회선만이 설치되는데 그쳤다. 그 결과 동서베를린 간의 전화연결 상태는 1945년의 통신 수준으로 회귀했다는 불만이 나올 정도였다. 따라서 동베를린 경찰관서들과의 전화통신은 당분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무선통신망은 동서 베를린 경찰 간 서로 다른 채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동서베를린 경찰 간 호환이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동베를린 지역에서는 110비상전화와 그에 따른 ‘110순찰차 출동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110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다음으로 차량과 관련, 동베를린 경찰로부터 인수가 완료된 인민경찰의 차량 가운데 안전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용하거나, 상태에 따라 당분간 사용하거나,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에 대해서는 사용을 중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해양경찰 무기도 통합하여야 한다. 먼저 권총의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통합 당시 서베를린 경찰은 P6형 권총 18,150정을 보유하고 있었고, 동베를린 인민경찰은 9.02×18mm형 마카로브 권총 11,646정, 7.65mm 74형 모델 권총 1,543정, 5.45형 PSM 권총 71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민경찰의 권총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안전상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에 통합베를린 경찰은 전부 P6형 권총으로 무장시킨다는 계획 하에 연방내무부에 보관 중인 재고 약 1,500정의 권총을 공급하고, 추가로 권총 약 6천개를 새로 조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통일 직후 실제 지급된 권총은 500-600개에 불과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 동독의 것을 서독화 시키는데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갔다. 북한과 남한도 마찬가지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현황 및 성능만 보아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과 남한이 평화 협력 상태로 들어섰다고는 하나 통일 전에 서로의 군사적 무기를 공유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남북 서로 타 국가의 통일 사례를 되짚어 보며, 차츰 한 발짝씩 통일을 향해 나아가며 공통적인 군사협력기구를 개설해, 전체적인 장비는 공유하지 못하더라도 새로 충당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장비들에 한해서 공동 장비를 개발하여 사용하여 점차적으로 무기 등을 통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과도기 북한지역에 대한 치안 담당이다. 독일에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급변사태가 발생한 이후 통일조약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동독지역에 대한 치안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독의 인민 경찰이 담당했다. 급변사태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동독이라는 국가체제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당연한 조치였다. 다만, 동독의 인민 경찰은 치안 그 자체를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민과 그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각종 현실적인 위협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한계까지 가는 인내를 가지고 신중하게 처신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한국의 해경도 북한지역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 해양치안기관부터 경찰권을 인수 받기 전까지는 협력을 통해 북한지역을 평화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해경은 북한 해양치안 기관과의 공식적 대화 창구를 개설하고,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

남·북 해양치안 수뇌부로 구성된 협의조정을 위한 임시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남·북한 해양치안기관은 이를 통해 해양경계지역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해양치안 상황에 즉시적 이면서도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해경은 이러한 접촉을 통해 북한 해양 치안 조직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통일 이후 해양치안 체계 구축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 6 장 결론 및 제언

남북은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민족적·정치적 차원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과제이다. 통일 과정이 진행될 무렵인 통일 과도기에는 진정한 의미의 민족 대통합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긴 세월 동안 분단되어 각자의 체제로 살아온 두 나라가 통일이 되는데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갑작스러운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지만, 무엇이든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실정이다. 우선 남북한의 통일 이후 치안 행정의 과제 및 조기에 효율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독일, 예멘 등의 외국 경찰의 통합사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통일 과정과 유사한 독일의 경찰통합 사례를 중점적으로 효과적인 대응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통일 한국의 해양안보 환경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크게 변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북한과 군사적 대치 상태가 해소됨에 따라 전통적인 안보의 관점이 육지에서 해양으로 전환되며, 특히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인접국 간의 해양자원, 영유권 주장 등 해양관할권 다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한미 관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통일 이후에는 현재와는 다른 느슨한 형태 내지 약화된 형태의 한미 관계를 예상해 볼 수 있는바, 통일 후 한반도 전체에 대한 치안 소요의 급격한 상승이 예상되므로, 해양관할권의 확대와 두만강·압록강 하구 지역 경비업무 수행, 해안경비 임무 수행 등 해양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통일해양경찰의 역할 증대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비가 필요하다.

통일 한국에서 해양경찰은 단순히 남북한 영토·영해의 물리적인 통합이거나 중간에서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비전으로 해양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의 물리적 통합뿐만 아니라 각 개인, 기관,

조직 간 화학적 통합협력이 필요하며 나아가 주변 해양 경비세력과 협동하여 유연성을 갖고 동아시아의 해양을 보전하는 목표로 나아 가여야 한다.

다른 선진국 및 주변국 대부분이 국민과 연계한 민간조직이 해양경비조직의 업무를 상당히 지원하고 있다. 우리 해양경찰도 다양한 민간조직의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안정화하여 통합 해양경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단순히 해양경찰이라는 독립 세력을 통한 해양경비뿐만 아니라 민간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가용한 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입체적 해양경비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외 민간세력과의 협동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해양치안기관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인도적 차원의 수색 구조와 같은 업무를 통해 보다 나은 해양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있지만, 통일 한국은 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통일 경찰은 Fig. 2와 같은 C4ISR 기반 입체적 시스템구축-미국 해안경비대 시스템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적절한 인력으로 국가의 해양영역을 적시에 수호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과 능력을 갖춘 해양경찰로 되기 위해 해양경찰 임무 수행에 있어서 C4ISR의 가치를 증대하고, 해양경찰의 조직 전략과 함께 사업 전략, 정책, 자원 확보로 성취되는 서비스 충족을 목표로 한다. 영해 수호에서 벗어난 오늘날 해양경찰의 활동 영역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을 넘어 동아시아, 극지해역 등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광활한 해역의 실시간 경비를 위해서는 인공위성, 항공기, 함정 기타 통신 시스템을 네트워크 기반으로 C4ISR 해양경비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수립과 해양경비 미래 비전 확립이 필요하다. 시스템은 IT 기술과 연동되어 해양환경 보호, 법 집행, 수색 구조 등 다양한 해양경비 임무에 필요하며 안보 위협을 저지하는 등 우리 해양안전에 매우 중대한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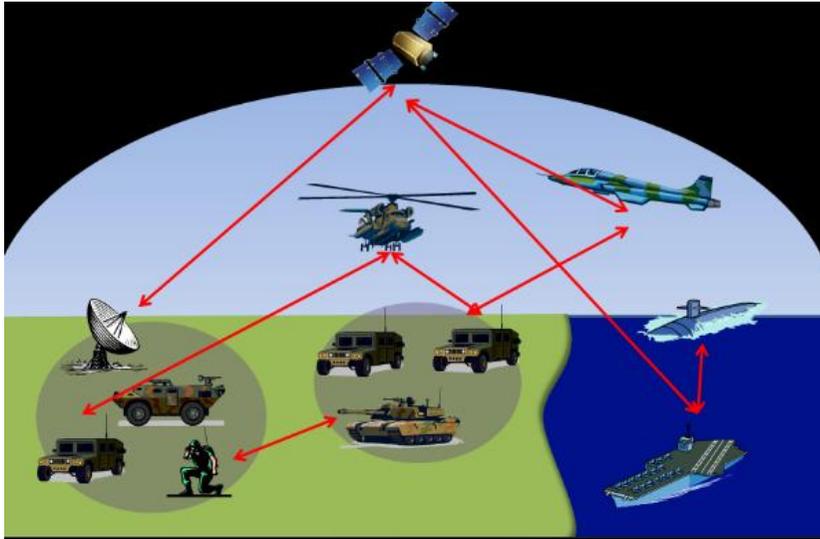


Fig. 2 미국 USCG, C4ISR 벤치마킹

경찰의 통합 이행 단계에서는 남북한 각각에 예상되는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대비책을 마련하여 과도기에 발생 가능한 사회적 갈등요인들을 조기에 해소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북한지역에 경찰 인력을 재배치해야 할 경우 중간관리자급 이상은 남한 출신 경찰로 배치해야 할 것이며, 북한지역에서 근무하게 될 남한의 중간 관리직 경찰 간부들에 대한 인사적 측면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통일이 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로는 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거대국가들과 인접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의 영향력 행사를 위한 경쟁의 틈바구니에 놓이게 되어, 4대 강국 사이에서 항상 가져왔던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혼란기의 불안과 무질서를 단시일 내에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 안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서 북한 관련 자료 수집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폐쇄적인 면모를 보인다. 사회의 일반 현황은 물론이며, 특히 정치체제 또는 정부 형태가 어떻게 운영되는가는 통상적으로 비밀에 속해 있다. 더욱이 북한의 경우는 폐쇄 정도가 어떤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 심하고, 정권 유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민 보안부에 대한 정보는 매우 폐

쇄적이다. 이에 분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확보가 매우 힘들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북한 경찰에 대한 최신의 보다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고 수집하여, 통합방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령, 2009. 남북 화해기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고려대학교.
- 김수영, 1998. 남북통일에 대비한 경찰조직의 통합방안과 치안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고려대학교.
- 김재광, 2018. 해안경계 임무전환에 따른 해안경비시스템의 정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여수:전남대학교.
- 김종명, 2009. 남북한 통일대비 치안 수요에 대한 대처방안 연구:통일과도기 치안수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군포:한세대학교.
- 신윤창, 안치순, 2017. 남·북한 치안체제 비교 및 통일대비 통합방안:남한의 경찰청과 북한의 인민 보안성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회 제21권 제1호 63-90.
- 엄정운, 2014. 통일시대 대비 남북한 경찰통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동아대학교
- 이관희, 1996. 독일 통일과 구동독 경찰의 조직정비. 경대논문집 제16집 119면.
- 이상안, 2001. 새 경찰행정학. 대명출판사.
- 이하섭, 2010. 통일 이후 남·북한 경찰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한성대학교.
- 전현준, 2018.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1-68.
- 조동진, 2003. 남북한 군사통합방안:해군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최정우, 2014. 남북한 경찰제도의 비교와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전:충남대학교.
- 치안연구소, 1998. 통일과도기 치안수요예측과 경찰대응방안 연구. 서울:치안연구소.